

#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315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위탁사무명

-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 운영

## 2.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관련근거
 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 - 「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센터의 운영)
  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(의회 동의 등)
- 추진 필요성
  -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의 위탁기간 만료('25. 12. 31)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질적 향상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

## 3. 위탁사무 내용

-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진단
-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
- 정신건강사업 수행
  - 정신건강증진사업,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사업,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,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, 자살예방사업
- 기타 하남시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## 4. 시설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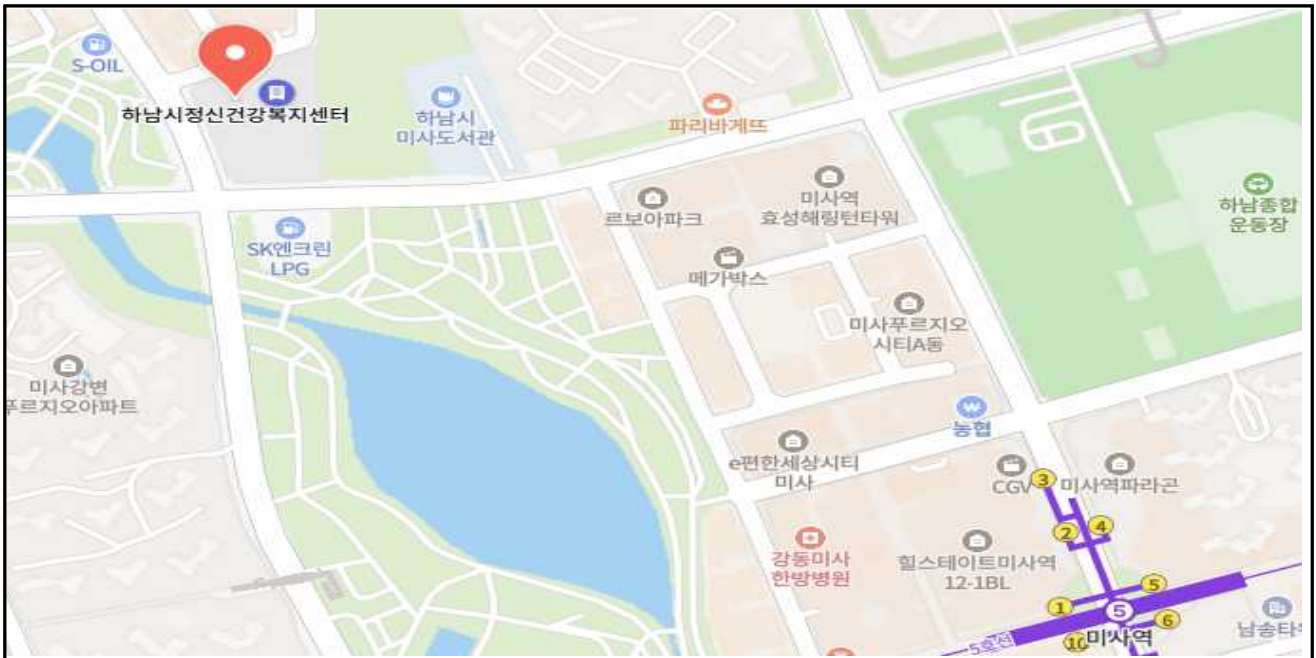
### ○ 사업장 개요

시설명	소재지		면적	시설
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(부설)하남시자살예방센터	하남시 미사강변대로	2층	361.21㎡	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, 스트레스검사실, 마음쉼터, 당비실, 창고 등
	200, 미사보건센터	4층	52.67㎡	문서보관실

### ○ 인 력: 28명

합계	비상근	상근						행정 요원
	센터장	정신건강전문요원			비정신건강전문요원			
		간호사	사회복지사	직업치료사	간호사	사회복지사	임상심리사	
28	1	2	14	2	1	6	1	1

### ○ 위치도:



미사2동 행정복지센터, 미사도서관 인접지역

## 5. 민간위탁기간

- 2026. 1. 1.~2028. 12. 31. (3년)

## 6. 수탁자 선정방식

- 모집방법: 공개모집
  - 민간위탁 공고 (공고일로부터 14일 예정)
  - 신청기관 1개소 이하인 경우 재공고 (재공고일로부터 7일 예정)
  - ※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추진 예정
- 선정방법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
  - 정량평가 내용 확인 및 사업계획 현장 발표 후 정성평가
  - 평가 결과 취합 후 최고점 1개 및 최하점 1개를 제외한 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최다 득점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  - ※ 단,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
  - 동점일 경우 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탁자 선정

## 7. 민간위탁 소요 예산

- 위탁예산: 연간 1,945,711천원 (국비30%, 도비11%, 시비59%)
  - ※ 2025년도 사업비 기준, 2026 ~ 2028년도 예산은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 가능

##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법령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,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적절한 근거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무로 판단되며, 이에 따라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  -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: 「정신건강복지법」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는 사무로, 수탁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함
  - 공공성 측면: 민간위탁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함
  - 효율성 측면: 민간위탁은 전문성 기반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, 성과 측정 및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운영 방식임

## 9.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

### ○ 평가 개요

- (수탁기관) 성남사랑의병원
- (위탁기간) 2023. 1. 1.~2025. 12. 31.
- (평가기간) 2025. 7. 14.~7. 18.
- (평가자) 3명 (정신건강팀장 및 담당 주무관 2인)
- (평가범위) 2023. 1. 1.~2025. 6. 30.까지의 위탁업무 전반
- (평가방법)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

### ○ 평가 지표 및 점수

평가 지표		평가자 1	평가자 2	평가자 3
공통분야 (사업운영비전 재정·조직운영효율성, 사회적 가치)	37점	36	33	32
개별분야 (사업성과, 시설관리, 개선노력)	48점	45	45	44
사용자만족도 (만족도 제고노력)	15점	15	14	15
<b>총점</b>	<b>100점</b>	<b>96</b>	<b>92</b>	<b>91</b>
<b>평균 및 결과</b>		<b>93 / 탁월</b>		

- 2023년 및 2024년 주요 정량지표에서 100% 이상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, 치료비 지원, 자살예방 등 전반적인 사업에서 고른 성과를 나타냄.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'만족' 수준 이상을 유지하였고, AI 기반 앱 개발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확장 가능성도 확보함.

## 10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'25. 9. 9.~9. 19.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
- '25. 9. 25.~10. 21.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'25. 10월~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'25. 12월 협약체결

## 11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발췌서 1부(붙임1)
-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(별첨)

## 관련 법령 및 조례

###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센터의 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##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위탁기간

6. 수탁자 선정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
10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